

의안번호	2203392
의 퇴 인	권영진의원
회 답 일	2024.11.11
추 계 번호	24B2584
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업무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견조정 등 업무 확대로 필요한 전담인력(3인)을 충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억 3,900만원, 2030년 2억 4,7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11억 8,700만원(연평균 2억 3,8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(안 제8조제2항)	239	229	233	238	247	1,187	238

주: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국토교통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조제2항 (대도시권광역 교통위원회 설 치 등)	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음(제2항) 3의2. 제7조의2제6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과 정에서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. 제7조의6에 따른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5. 제7조의7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	의무규정
2	안 제11조의2 (부담금의 감면)	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 함. 다만, 제8호의 사업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100분의 75를 경감함(제2항) 5. 「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복합개발사 업 6.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7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혁 신지구재생사업 •(현행) 제5호의 사업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75% 경감 •(개정안) 제8호의 사업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 75% 경감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8조제2항 (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)	○	•(추계) 위원회 업무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과정에서 이견 조정,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 및 도로사업 승인 등이 추가됨에 따라 필요한 신규인력 3인을 고용할 때 소요비용을 추산함
2	안 제11조의2 (부담금의 감면)	×	•(미첨부3호) 복합개발사업,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, 혁신지구재생사업 지구에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75% 경감함에 따라 세외수입 감소가 예상되나, 해당 지역의 개발이익 등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기초정보가 불확정적이어서 관련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국회예산정책처 공무원인건비 상승률, 정부기관 기관부담금, 자산취득비 전망치¹⁾ 적용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과 사업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른 추계대상은 위원회 업무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과정에서 이견 조정,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 및 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의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(2024.11.)

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공무원인건비상승률(%)	2.5	1.9	1.9	1.9	1.9	1.9	1.9
기관부담금전망치(%)	13.004	13.004	13.066	13.130	13.194	13.286	13.380
자산취득비(천원)	4,801	4,907	5,010	5,120	5,228	5,337	5,449

업무를 수행할 전담 행정인력 3인을 고용할 경우 소요비용으로 인건비, 기관부담금 및 자산취득비를 합산하여 추산함

- 국토교통부는 위원회 소관 업무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과정에서 이견 조정,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 및 도로사업 계획 승인업무가 추가될 경우, 총괄사무관 1인, 수도권 담당 주무관 1인, 지방 대도시권(4개) 담당 주무관 1인 등 총 3인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임
 - 협의·조정 회의, 전문가 자문 및 관련 용역 관리, 실무위원회, 권역별위원회, 본위원회 구성·운영 등 관련 심의·조정업무 전반 수행 필요
- 이에 따라 본 추계에서는 사무관 1인과 주무관 2인 고용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를 추산하며, 인건비 적용단가는 국토교통부 내 해당 인력의 평균 인건비를 적용함
- 인건비, 기관부담금,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함

□ (인건비) 인력 3인의 2024년 기준 인건비 단가는 국토교통부 내 평균인건비 수준으로 가정하며, 해당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

[표 2] 인건비 단가: 2024년 예산기준

						(단위: 원)
구 분	연봉월액	식비	직급보조비	지급횟수	인원	소요액
5급	6,195,796	140,000	250,000	12	1	79,029,552
6급	4,347,046	140,000	185,000	12	2	112,129,104
합계						191,158,656

주: 제 수당 제외

자료: 국토교통부 제출자료

- 2024년 인건비 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 공무원인건비 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추산하면 다음과 같이 추계됨

[표 3] 인건비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						(단위: 백만원)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인건비	198	202	206	210	218	1,035

- (기관부담금) 인력 3인의 기관부담금은 추산된 인건비에 다음의 기관부담금 비율을 곱하여 추정함

[표 4] 기관부담금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기관부담금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인건비(백만원, c)	198	202	206	210	218	1,035
기관부담금요율(% , d)	13.066	13.130	13.194	13.286	13.380	—
합계(c×d, 백만원)	26	27	27	28	29	137

주: 기관부담금은 공무원 채용에 따라 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공무원연금, 건강보험,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 금액을 의미함

- (자산취득비) 인력 3인의 자산취득비(1인당 491만원)는 추계 첫 해에만 발생하며, 국회예산정책처 정부기관 자산취득비 단가를 적용하여 추정함

[표 5] 자산취득비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자산취득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필요인력(3인, e)	3	—	—	—	—	3
자산취득비 단가(f)	5.010	—	—	—	—	—
합계(e×f, 백만원)	15	—	—	—	—	15

- 이상의 가정을 바탕으로, 위원회 업무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견조정 등 업무 확대로 필요한 전담인력(3인)을 충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억 3,900만원, 2030년 2억 4,7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11억 8,7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6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인건비	198	202	206	210	218	1,035
기관부담금	26	27	27	28	29	137
자산취득비	15	—	—	—	—	15
합계	239	229	233	238	247	1,187

IV. 부대의견

- 본 보고서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위원회 업무 추가에 따라 필요한 인력 3인에 대한 인건비 소요를 추산한 결과로,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사업비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문지은	배아형

□ 대표연락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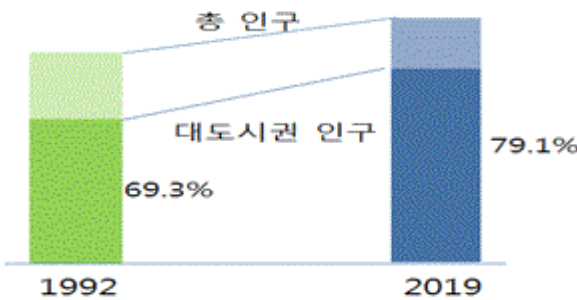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문지은	02-6788-4645	mtsophia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개요

자료: 국토교통부

□ 설립 목적

- 대도시권 인구집중으로 교통문제가 심화됨에 따라, 길 위에서 최대 2시간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하락
- ⇒ 장시간 출퇴근 문제 해소 등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,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립('19.3)
 - * 당초, 지자체 차원의 광역교통 이권조정을 위해 '수도권교통본부'가 운영된 바 있으나 기능에 한계가 있어 해산('19.4)되고, 대광위로 기능 이관

<대광위 설립경위>	<전국 5대 대도시권>						
■ 광역교통청 설립 개정안 발의('16.10) * 정병국 의원 등 수도권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의원 다수 발의 ■ 법안 논의 과정에서, 지자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'위원회' 형태의 설립으로 합의(행안부 의견) ■ 「광역교통법」 개정('18.12) 이후 출범 준비를 거쳐 대광위 설립('19.3)							
< 대도시권 인구비중 증가 >							
 <table border="1"> <caption>대도시권 인구비중 증가</caption> <thead> <tr> <th>연도</th> <th>대도시권 인구 비중 (%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992</td> <td>69.3%</td> </tr> <tr> <td>2019</td> <td>79.1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연도	대도시권 인구 비중 (%)	1992	69.3%	2019	79.1%	
연도	대도시권 인구 비중 (%)						
1992	69.3%						
2019	79.1%						

□ 위원회 역할

- (성격) 일반적인 자문위원회와 달리, 광역교통 정책결정권과 조정권, 예산 집행권을 가진 광역교통 전담기구로서의 행정위원회
- (기능)

- ①광역교통기본·시행계획, 신도시 교통개선대책 등 각종 교통계획 수립
- ②광역·도시철도, 광역·혼잡도로, BRT, 환승센터 등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
- ③광역버스·알뜰교통카드 등 광역교통 서비스 제고
- ④지자체 간 광역교통 갈등조정 등